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7차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차액가맹금 공개 〉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65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한규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9. 5.
- (3) 회 부 일 : 2024. 9.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가 여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등록기관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물품을 공급하면서 얻게 되는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의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의무기재사항이지만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음.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여러 가맹본부의 사업을 비교하여 가맹점 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임. 따라서, 영업비밀로 분류하기보다 가맹희망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은 영업 비밀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고 가맹희망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라목 및 제6조의2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영업비밀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라목 및 제6조의2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제2조(정의) ----- -----. 1. ~ 9. (현행과 같음) 10.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부담[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제조원가 또는 구입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과 관련한 가맹점당

현행	개정안
마. ~ 아. (생략) 11. · 12. (생략)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 ② (생략) ③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신설>	<u>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을 포함한다]</u> 마. ~ 아. (현행과 같음) 11. · 12.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단서 삭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

현행	개정안
④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공개(시·도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⑥ (생략)	<u>율은 영업비밀로 보지 아니한다.</u> ⑤----- ----<u>제3항 및 제4항</u>----- ----- ----- ----- ----- -----. ⑥-----<u>제3항 및 제4항</u>----- ----- ----- -----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현행법 제2조제10호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의 일반적인 등록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¹⁾.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1)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3)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동법 시행령 [별표 1]은 정보공개서에 등록하여야 하는 기재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차액가맹금도 정보공개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음.

□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액가맹금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취지임.

<현행 시행령과 개정안 차액가맹금 규정 비교>

동법 시행령 [별표1]	개정안(안 제2조제10호라목)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나. 영업 중의 부담 2)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u>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u>(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와 관련한 다음의 사항(부동산 임차료가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기재하며,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정보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u>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u>	라.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u>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제조원가 또는 구입원가를 초과하는 금액</u>(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과 관련한 <u>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을 포함한다</u>]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바.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동법 시행령 [별표1]	개정안(안 제2조제10호라목)
나)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다만, 헌법재판소는 ‘가맹사업자의 부담(차액가맹금 포함)’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며, 가맹사업의 발전 또는 문제점의 발생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이나 탄력적 규율이 필요하므로,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까지 입법자가 반드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
- 또한, 개정안은 차액가맹금의 정의를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에서 ‘제조원가 또는 구입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가맹금과 관련하여 ‘적정한 도매가격’ 또는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³⁾⁴⁾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헌재 2019헌마288](2021.10.28.)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라목 및 마목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과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중 가맹회맹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사항을 한정하여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일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의 발전 또는 문제점의 발생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이나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하므로,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까지 입법자가 반드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헌재 2019헌마288](2021.10.28.)

(사)가맹사업에 관한 미국, 호주 등 여러 입법례에서도 가맹금을 정의하면서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으로 지급 받는 대가 중에 ‘적정한 도매가격’ 또는 ‘순 도매가격’으로 구매하는 대가의 경우 가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적정한 도매가격’ 또는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거래에 관한 정보공개요구 및 금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합리적 수량의 재판매용 또는 임대용 재고를 적정한 도매가격(bona fide wholesale prices)으로 구매하는 대가’는 가맹금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16 C.F.R. § 436. 1(s)]. 또한 각 주 가맹사업법의 시행규칙 또는 관련 부서의 지침 등에서 ‘적정한 도매가격’인지 여부 판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열거하고 있다.

4) 최영홍, 고려법학 제56호(2010년 3월), 가맹금의 개념과 정의조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은 현재 시행령을 통해 규율되고 있는 사항으로, 탄력적 대응을 위해 현행과 같이 하위법령으로 규율함이 타당하고, 차액가맹금을 제조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의할 경우 제조원가 산정 방법에 따라 부정확한 정보가 산출·제공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편,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 그리고 현행법 제6조의2제3항 단서규정은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을 제외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⁶⁾, 영업비밀로 분류된 차액가맹금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음⁷⁾.

- 개정안은 차액가맹금의 내용을 영업비밀에서 제외하여 공개되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차액가맹금을 현행법상 영업비밀에서 제외하는 경우, 차액가맹금이 가맹희망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공개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차액가맹금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이 담긴 정보공개서의 경우 가맹희망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가맹본부의 기본권(피해 최소성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헌재 2019헌마288](2021.10.28.)

가맹사업법은 차액가맹금이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만 제공하고 일반인에게는 공개하고 있지 아니하다(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3항 단서).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정보공개서의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은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4 제2항, 제3항). 가맹희망자가 이를 유출하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민·형사상 제재를 할 수 있어,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생략)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③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7)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법 제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원본이 제공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은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로, 일반에 공개 시 가맹본부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가맹희망자는 이미 영업비밀(차액가맹금 포함)이 포함된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받고 있는 바, 차액가맹금을 영업비밀에서 제외할 실익도 크지 않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4
